

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824
----------	------

2021년 12월 20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10월 15일, 성흠제 의원(찬성자 27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03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21년 12월 20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성흠제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재난 및 사고 발생 시 ‘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’은 관할 소방서의 ‘현장지휘팀장(소방경)’이 지휘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지휘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그에 걸 맞는 직급체계를 갖추어야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최적의 지휘능력이 발휘된다고 볼 때 지금의 지휘팀장체계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 이에 서울시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을 관할 소방서 ‘현장대응단장(소방령) 또는 담당팀장(소방경)’의 복수직급 지휘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

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을 관할 소방서 ‘현장대응단장’ 또는 ‘담당팀장’이 하도록 함(안 제2조제1항제2호라목)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,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일사분란하고 명확한 지휘권을 확립·강화하고자 기존의 ‘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(담당팀장)’의 직급을 일부 상향하여 ‘현장대응단장(소방령) 또는 담당팀장(소방경)’의 복수직급 지휘체제로 운영가능토록 개정하려는 것임.

[표 1] 현행과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현장지휘관"이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(이하 "소방재난본부"라 한다)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	2. -----(현행과 같음)----- ----- -----.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b>라.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: 관할 소방서 담당팀장</b>	<b>라.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: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(또는 담당팀장)</b>
마. (생략)	마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## ■ 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영 현황

- 세월호 사고 등 여러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
- 현재 각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현장대응단의 경우, 아래 [그림1]과 같이 현장대응단장 1명(소방령)에 각 3팀(팀장 소방경), 전체 약 20명으로 구성되어 24시간, 3교대로 운영 중에 있음.



[그림 1]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영 사례

- 이중 현장대응단장은 일근 근무자로서 평상시 현장대응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일 주간 시간대 재난발생 시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(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관련 현장책임자)의 임무를 병행하고 있으며,
- 평일 야간 및 휴일에는 현장지휘팀장(소방경)이 현장대응단장을 대신하여 긴급구조지휘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.

- 다만, 「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항제2호1)에 따르면,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의 경우 ‘관할소방서 담당팀장’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장대응단장이 ‘지휘권’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일 주간 시간대에 한해서는 실질적 지휘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, 이는 현행 규정과 현실이 일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## ■ 개정안에 대한 의견

- 안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은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을 현행 ‘관할 소방서 담당 팀장’에서 ‘현장대응단장(소방령) 또는 담당팀장(소방경)’의 복수직급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,
- 현행 소방서 지휘팀장의 계급(소방경)이 소방서 산하의 각 119안전센터의 센터장 및 진압팀장의 계급과 동일하여 일부 현장에서 출동대간 소통과 팀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지휘통솔이 원활치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,
- 또한, 재난현장 특성상 소방자원 뿐만이 아니라 외부 지원기관에

1) 「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생략

2. “현장지휘관”이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(이하 “소방재난본부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장 : 소방재난본부장

나.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장 :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(또는 방면지휘본부장)

다.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: 관할 소방서장

라.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: 관할 소방서 담당팀장

마. 선착대장 : 현장에 최초 도착하는 소방대의 장

② 생략

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급에 따른 제약사항과 과도한 책임 문제로 현장지휘팀장의 소극적인 태도견지와 효율적인 자원운영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,

- 본 개정안과 같이 현장지휘관의 직급을 한 단계 상향(소방경→소방령)함과 동시에 현장대응단장 역시 3교대 체계로 전환하여 현장지휘체계 일원화와 강력한 현장지휘통제권을 담보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
- 다만, 본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로서는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의 소방령 정원 개정<sup>2)</sup>에 따라 우선적으로 5개 소방서만 ‘현장대응단장(소방령)’ 3교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나머지 소방서에 대한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소방령 정원 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**

**5. 토론요지 : 없 음**

**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**

**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**

**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---

2)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이 개정('21.10.28.)되어 소방령 정원이 145명에서 155명으로 증가하였음.

#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흠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2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성흠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기대, 김인제, 김제리, 김태수, 문장길, 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 송재혁, 송정빈, 양민규, 유정희, 이광성, 이상훈, 이영실, 이정인, 이준형, 임종국, 장상기, 전병주, 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‘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’은 관할 소방서의 ‘현장지휘팀장(소방경)’이 지휘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지휘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그에 걸 맞는 직급체계를 갖추어야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최적의 지휘능력이 발휘된다고 볼 때 지금의 지휘팀장체계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 이에 서울시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을 관할 소방서 ‘현장대응단장(소방령) 또는 담당팀장(소방경)’의 복수직급 지휘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을 관할 소방서 ‘현장대응단장’ 또는 ‘담당팀장’이 하도록 함(안 제2조제1항제2호라목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: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(또는 담당팀장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현장지휘관"이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(이하 "소방재난본부"라 한다)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b>라.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:</b>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(현행과 같음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라.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: 관</b></p>
<p><b>관할 소방서 담당팀장</b></p>	<p><b>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(또는 담당</b></p>
<p>마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팀장)</b>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